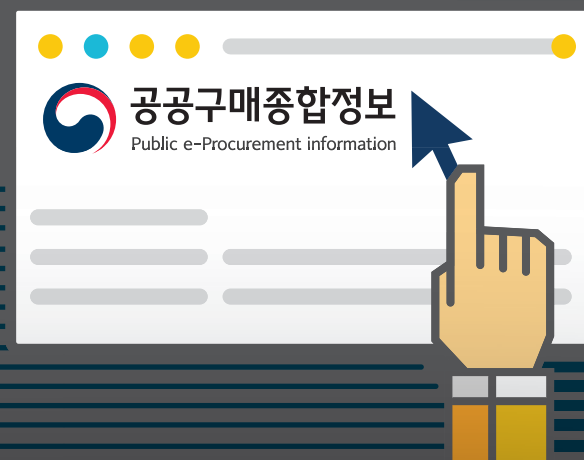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EPC) 안내



CONTENTS 목차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성능인증제도(EPC)** 안내

chapter I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EPC)
제도의 A to Z

chapter II

하반기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성능인증
바뀐 점은 무엇인가

chapter III

신청 방법

성능인증 신청 방법,
꼭 알아두세요!



I 성능인증제도(EPC)

성능인증이란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획득



법률 및 행정규칙 상 성능인증 대상제품

판로지원법 제14조 및 관계 법령을 통해 성능인증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

판로지원법 제14조

[우선구매 범위]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동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 범위]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제품, 소프트웨어,
그 외 지정제품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성능인증 범위]

신기술/신제품인증제품,
신뢰성인증제품,
고시한 제품

시행세칙 제6조, 별표1

20개 기준 고시

* 다음페이지 참고

<p>신청대상</p>	<p>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p>	
<p>신청대상제품</p>	<p>특허 실용신안</p>	<p>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p>
	<p>국가기관 인증</p>	<p>우수재활용제품(GR),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녹색기술 인증제품</p>
	<p>기술개발 사업 개발품</p>	<p>기술혁신개발사업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제품, 특정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사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우수품질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p>

신규신청 규격추가


표준규격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성능검사성적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개검증 정보제공동의서

- * **성능검사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인증을 받은 분야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함
- * **단**, KOLAS인정 시험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규정한 이외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은 필수**
- * **성능검사 성적서 유효기간** :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일 기준)**

연장신청

성능인증 연장신청서(기간연장 설명서), 판매실적,
표준규격설명서(최초 성능인증 발급 시 제출했던 규격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성능검사성적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개검증 정보제공동의서

- * **연장신청**은 동일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효력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능개선 등을 사유로 새로운 제품을 제출할 수 없음**
- * 최초 성능인증 발급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로 신청가능하나, **접수 시 유효기간 만료**로 확인된 경우, **제11조(성능검사 등)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p>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p>	<p>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가능</p>	
<p>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p>	<p>특허·실용신안</p>	<p>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전국인 경우 가능하며, 통상실시권은 신청 불가 * 공동특허는 반드시 신청자 외 공동특허권자의 동의서(생산·제조·납품 등에 대한 권리) 첨부 <p>★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특허공보]</p>
	<p>국가기관 인증</p>	<p>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p> <p>★ [인증서 또는 평가서류]</p>
	<p>기술개발사업 개발품</p>	<p>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개발 완료 또는 성공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p> <p>★ [완료(성공)판정 공문 또는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서류]</p>
<p>신청불가품목</p> <p></p>	<p>신청불가품목</p>	<p>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p> <hr/> <p>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p>



STEP 1

신규/기타	N 신규신청	+ 규격추가	→ 연장신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표준규격설명서, 성능검사성적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가 아닌 다른 근거기술로 신청하더라도 제품과 관계있는 특허 보유 시 서류 첨부 ●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 온라인시스템으로 신규신청/연장신청/규격추가 신청 (절차는 동일) 		
신청기간	상시 접수	상시 접수	인증 만료일로부터 120일 ~ 60일 전 신청접수
근거·서식 및 예시	시행세칙 제6조 별표4, 별표4의2	시행세칙 제6조 별표6	시행세칙 제22조 2항 별표5
 <p>성능인증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신청내역목록 영문인증서발급신청 성능인증담당자 연락처 성능인증 수수료 수납 	<p>신청내역목록 ★ 신규신청은 신청 에서 연장신청, 규격추가는 신청내역목록 에서 진행</p> <div data-bbox="725 1193 1554 1497"> <p>■ [이용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확인서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받았던 성능인증 확인서를 "연장신청", "기타", "규격추가", "법인전환", "공정주소변경", "양도" 등의 이유로 다시 발급 ○ 성능인증 확인서 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신청이 "신청취소", "반려" 등으로 발급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다시 신청 ※ 발급/신청된 품목을 선택하여 상세화면의 최하단 재신청 또는 재발급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 e-카탈로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제품의 등록된 물품에 대해 e-카탈로그 등록 및 작성 ※ 발급된 성능인증 내용이 e-카탈로그 작성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STEP 1

재발급	양도	공장변경	정보변경	법인전환
신청방법	합병된 회사 또는 양수받는 회사로 구매정보망에 로그인한 후, 재발급 신청	구매정보망(SMPP)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존 성능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전·후, 공장등록증 전·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포괄양도양수서(법인전환 시), 기존 성능검사성적서		
신청절차	공장심사·성능검사 실시(양도/공장변경 건은 신청기업 부담)		-	
예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padding: 2px;">성능인증</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bottom: 5px;">성능인증 안내</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bottom: 5px;">신청</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bottom: 5px;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신청내역목록</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bottom: 5px;">영문인증서발급신청</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bottom: 5px;">성능인증담당자 연락처</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bottom: 5px;">성능인증 수수료 수납</p> </div> <div> <p>신청내역목록 ★ 신청내역목록 에서 진행</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이용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확인서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받았던 성능인증 확인서를 "연장신청", "기타", "규격추가", "법인전환", "공장주소변경", "양도" 등의 이유로 다시 발급 ○ 성능인증 확인서 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신청이 "신청취소", "반려" 등으로 발급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다시 신청 ※ 발급/신청된 품목을 선택하여 상세화면의 최하단 재신청 또는 재발급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 e-카탈로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제품의 등록된 물품에 대해 e-카탈로그 등록 및 작성 ※ 발급된 성능인증 내용이 e-카탈로그 작성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div> </div> </div>			

STEP 2-1

요건검토

- 1 전문기관은 SMPP(구매정보망)에서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할인대상 여부 검토
- 2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전수점검
 - * 전산 서식(SMPP-구매정보망) 검토
 - * 표준규격설명서, 성능검사성적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수수료 할인 기준 확인을 위함)
 - * 제품 이미지, 기타 관련 참고자료 등
- 3 점검완료(기업 보완완료) 후 접수완료 처리 및 수수료 납부 요청 (전문기관의 세금계산서 발행)



STEP 2-2

수수료 납부

- 1 기본 7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적합성심사 및 공장심사/성능검사 비용 포함
- 2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

할인 기준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업력 3년~7년 이내
소기업	소상공인	30% 할인 (539,000원)	25% 할인 (577,500원)
	소기업	25% 할인 (577,500원)	20% 할인 (616,000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3 동일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신청 시 심사수수료의 20% 감면 (동시 신청시 가능)

예

'19.2.18(월) 신청 → 보완 요청(완료) → '19.2.20(수) 접수 완료 및 수수료 납부 요청(세금계산서 발행) → SMPP(구매정보망) 가상계좌 서비스로 수납 가능 / 가상계좌는 1일 1계좌 생성되며, 당일 23:59까지만 활성화

STEP 3

공개검증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해 일정기간 공개하여 의견을 접수받고 심사에 반영하는 등 성능인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 접수완료 후 14일간 SMPP(구매정보망)에 주요신청 내용 공개

공개검증절차

- ① 신청기업의 **공개범위 지정*** → ② **전문기관의 정보공개 (14일간)** → ③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 ④ **신청기업에 의견전달** → ⑤ **신청기업의 소명자료 제출(10일)** → ⑥ **검토 후, 적합성심사 여부 결정** → ⑦ **이해관계자에게 조치결과 전달**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일부 발췌

1. 성능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 동의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 관련정보를 성능인증 처리 절차에..... 동의합니다.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등
공개검증동의내용 (V 표시)	<input type="checkbox"/> 전부 공개 (규격설명서, 성능검사 성적서, 기타 설명자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공개 (<input type="checkbox"/> 규격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성능검사 성적서 <input type="checkbox"/> 요약서)

전문기관역할

- 공개검증 의견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 여부 결정 (부적절시 반려 통지)
- 접수 시 의견 일체를 신청기업에 전달하여 10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적합성심사 반영

STEP 4-1

적합성심사 대면심사

신청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경제성, 공공시장적합성 및 표준규격설명서 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적합성(신규)에 대하여 심사

* 통과 기준 : 심사위원회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이 **적합** 판정

심사항목

총점100점
최초심사기준

기술성 평가 (50)	기술 반영도 (10)	근거기술 적용기술의 반영, 타 기업 및 기술 침해 우려
	성능 적합성 (15)	시험방법의 국내(국제)표준 일치성 및 성능 설명의 적절성, 핵심성능 우수성, 형식승인 확보
	기술적 객관성 (15)	객관적 증명(규격과 성능, 제품별 시험성적서), 성능의 연속성 증명(최대/최소/중간규격)
	난이도 (10)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및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경제성 평가 (30)	가격 경쟁력 (10)	기존 유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경제적 파급력 (10)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 가능성,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
	시장규모 (10)	신규시장의 창출 가능성,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증명 여부
공공시장 적합성(20)	공공성 (10)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 여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 및 객관적 데이터 증명
	안정적 생산능력 (10)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 보유,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 마련 여부

기타사항

심사 종료 후, 기업 담당자는 심사위원에 대한 역평가(블라인드 평가) 실시

* 공정성/전문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피 평가자로부터 3회 이상 지적된 위원은 심사위원단에서 위촉 해제

STEP 4-2

적합성심사 대면심사

신청제품에 대하여 동일 기술 적용 및 성능 여부, 동일 제품 여부 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적합성(규격추가)에 대하여 심사

* 통과 기준 : 참석 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5인 심사위원회일 경우 4인 이상 찬성할 경우 **적합** 판정

심사항목

동일 기술 적용 및 동일 성능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최초인증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그렇다 ()

아니다 ()

심사 결과

적합 ()

부적합 ()

기타사항

심사 종료 후, 기업 담당자는 심사위원에 대한 역평가(블라인드 평가) 실시

* 공정성/전문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피 평가자로부터 3회 이상 지적된 위원은 심사위원단에서 위촉 해제

STEP 4-3

적합성심사 대면심사

연장신청 제품에 대한 연장 승인 기준(시행세칙 제22조)을 확인 및 평가하여
성능인증 기간 연장의 적합성에 대하여 심사

* 통과 기준 : 심사위원회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이 **적합** 판정

심사항목

<input type="checkbox"/>	제품 상용화 지연 (100)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공공기관의 수요, 기업 귀책사유 없이 제품 상용화가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술개발 제품의 경쟁력 (100)	가격 경쟁력 (25)	생산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0% 이하</th> <th>0%이상~6%미만</th> <th>6%이상~12%미만</th> <th>12%이상~18%미만</th> <th>18% 이상</th> <th>미제시</th> </tr> </thead> <tbody> <tr>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5</td> <td>0</td> </tr> </tbody> </table>	0% 이하	0%이상~6%미만	6%이상~12%미만	12%이상~18%미만	18% 이상	미제시	25	20	15	10	5	0		
	0% 이하	0%이상~6%미만	6%이상~12%미만	12%이상~18%미만	18% 이상	미제시												
25	20	15	10	5	0													
기술적 경쟁력 (75)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성능인증 기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시장형성 미흡 (100)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시장형성 미흡/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명되는가?																

기타사항

심사 종료 후, 기업 담당자는 **심사위원에 대한 역평가(블라인드 평가)** 실시

* 공정성/전문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피 평가자로부터 3회 이상 지적된 위원은
심사위원단에서 위촉 해제

STEP 5

규격확인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에서 지정한 납품예상기관에 공문(규격서 포함)을 송부하여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규격 및 조건인지 여부 공문 문의 →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사용 가능 규격인지 대한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 * 1회당 최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격 확인 진행 가능
- * 규격 확인은 **2회까지** 실시 가능

규격확인대상



규격문의대상

판로지원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 * 알리오(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알리오 안내 → 공공기관 현황
- *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홈페이지 → 검색 가능하고, 현재 존재하는 기관

비대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등

규격확인 기준

- 공공기관 회신이 없거나 부적합 회신이 있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문의 가능
- **2회 모두 부적합(무응답)**인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신청은 반려
 - * 해당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 통보
 - * 14일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규격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STEP 6

공장심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현장방문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여건, 신청 제품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하는 절차

* 공장심사 통과 기준 : 평가결과 항목별 점수의 **합계 65점 이상**

심사항목

경영상태 (10)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경영자의 기술혁신 관심도 및 의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기술 개발여건 (40)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대체 가능 서류
	기술개발 인력보유	기업부설연구기관 연구개발인력 현황 또는 대체가능 서류
	R&D 투자 비율	전년도 재무제표
	신기술인증 보유	NEP, NET, GS 등 /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생산 및 품질관리 (50)	ISO(9001,14001), 단체표준인증, GR, KS 등 공인인증	해당 증명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및 증빙서류
	생산기술 축적정도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핵심기술자인증가능 서류 등에서 1종
	제품생산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직접생산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품질관리 시스템 여부, 보유기술인력의 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등
가점(3)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등	최근 3년 해당 증명서

확인사항

공장심사 전, [별표 2] 서식을 활용하여 기업 자체평가 실시

* 공장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준비사항은 심사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STEP 6

성능검사

공장심사에서 생산 제품 및 환경을 확인하면서
규격서 상의 제품과의 일치성 및 시험성적서 대조를 통한 성능적합성을 직접 확인

-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인증을 받은 분야**의 시험성적서 확인
- * 단, KOLAS 인정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음 (**소명 자료 필요**)
- * 해당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만 인정 (**신청일 기준**)

확인사항

기업에서 제출한 규격서(시험성적서)와 생산제품 성능·모델의 일치 여부
규격서 상 제시된 성능항목의 유효한 시험성적서 구비 여부

★ 시험수수료 인하정책 MOU체결

성능인증용으로 시험 의뢰 시, 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 감면

[최초 1회] 성적서 발급 수수료 **20%** 감면 **[갱신]** 성적서 발급 수수료 **25%** 감면

관련 문의처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봉호 수석 02-2164-0165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정수 책임 02-3415-8896
	IC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형재필 센터장 031-428-3823	k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봉연 선임 02-860-1461

STEP 7

성능인증서 발급방법

구매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 대표 및 담당자에게 통지
인증서 유효기간은 성능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

영문인증서 발급방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회사명, 주소, 제품 등
 영문기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능이 미흡하여, '19년 중 개선 예정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성능인증 연장신청

- 유효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가능
- 연장신청은 만료일 120~60일 전까지 신청
- 성능인증 기간연장 관련 메일 서비스 제공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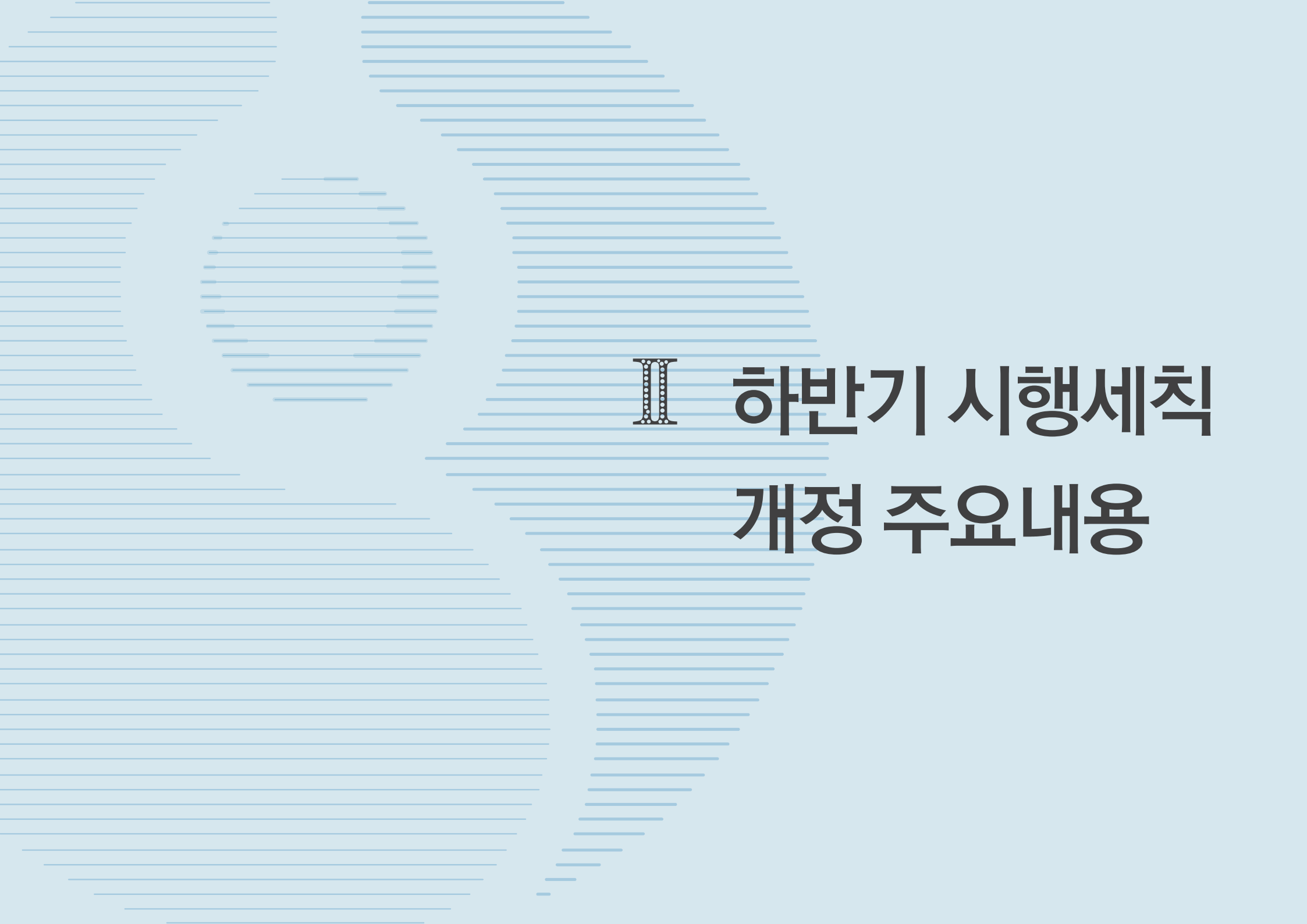
'19.09.01. 인증서 만료일

'19.07.04. ~ 05.05.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성능인증 발급 전, 만족도조사 실시(취득 사유, 친절도, 소요기간 등)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적용기술, 동일한 규격 또는 호칭을 사용하여 중복된 성능인증서는 발급 불가





Ⅱ 하반기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시행세칙 제6조, 제11조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시험인증을 받은 분야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시험성적서) 필요

* 규정(KOLAS) 이외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은 필수

성능인증 신청요건을 정비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적서 기준 강화

별표 4, 4의2, 5, 별지 제7호

신규	기술반영도	성능 적합성	기술적 객관성
	난이도	가격 경쟁력	경제적 파급력
	시장규모	공공성	안정적 생산능력
연장	상용화 지연	제품경쟁력 가격, 기술적	시장형성 미흡

심사표를 객관적으로 고도화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개정함으로써 법정인증 위상 강화

개편사항		개편 전	개편 후
심사절차 정비	규격확인절차 간소화, 연장신청 정비 (제9조,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확인 대상 : 1개 공공기관 ● 최대 2회 진행 가능 ● 연장신청 제품도 규격확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확인 대상 : 3개 공공기관 ● 최대 2회 진행 가능 ● 연장신청 제품 규격확인 제외
	성능검사 성적서 인정기준 전문화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LAS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모두 인정 * KOLAS 비인정 시험항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신뢰도 강화 → KOLAS에서 인정한 시험항목으로 발급된 성적서만 인정 * 단,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이에 대한 소명자료 필요
	이의신청제도 보완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포기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기간 중 동일 근거기술 및 성능인증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개편사항		개편 전	개편 후		
신청절차 정비	성능인증서 재교부 보완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교부 사유 발생 후 발급한 성능검사 성적서 제출 필수 	<p>생산환경 등 적절 유지 확인</p> <table border="1"> <tr> <td> <p>○ 적 절</p> <p>시험성적서 재발급/제시 불필요</p> </td> <td> <p>× 부적절</p> <p>KOLAS 시험성적서 발급/제출 필요</p> </td> </tr> </table>	<p>○ 적 절</p> <p>시험성적서 재발급/제시 불필요</p>	<p>× 부적절</p> <p>KOLAS 시험성적서 발급/제출 필요</p>
	<p>○ 적 절</p> <p>시험성적서 재발급/제시 불필요</p>	<p>× 부적절</p> <p>KOLAS 시험성적서 발급/제출 필요</p>			
중복인증 신청 금지규정 명확화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이 취소된 후 근거기술 활용 기준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발급 성능인증서가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성능인증에 적용된 기술은 중복기술의 예외로 판단 			

개편사항		개편 전	개편 후
업무범위 명확화	심사절차 보완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재교부 신청 관련 사유별 순차적 처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의 심사절차로 규격추가, 연장신청 또는 공장심사/성능검사의대상신청건 동시처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절차 중 부정 발급사유 확인 시 신청 반려 근거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절차 중 부정발급 사유 확인 시 성능인증 신청 반려가능
사후관리 고도화	사후관리 추진절차 및 기준 정비 (제2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후관리 절차 거부, 포기 시 성능인증 취소 가능
	성능인증 현장점검 근거규정 신설 (제24조의2)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중기부 및 전문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가능
	성능인증 취소 기준 정비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취소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득 시 ② 인증대상제품의 신청근거 취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인증 취소기준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부도·폐업 등 성능인증 유지 불가능 시 ④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성능인증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경우

제 호

성능인증서

- 제조업체명:
- 대표자성명:
- 소재지:
- 인증품목:
- 성능검사 규격기준:
- 인증 유효기간:
- 인증품목의 용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개편 전

제 호

성능인증서

- 제조업체명:
- 대표자성명:
- 소재지:
- 수검공장:
- 인증품목:
- 성능검사 규격기준:
- 인증 유효기간:
- 인증품목의 용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개편 후

성능인증 효력은 공장심사/성능검사를 수행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적용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Product :
Valid Thru :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Administrato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개편 전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Factory address :
Product :
Valid Thru :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Administrator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public of Korea

개편 후

성능인증 효력은 공장심사/성능검사를 수행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적용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평점
		1	2	3	4	5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불일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외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8, 등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0개	1개	2개	3개이상		
생산 및 품질 관리 (60)	○ ISO9001, ISO14001, 단계표준인증 제품, GR, R, 환경표지인증, K9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7	11	15			
	○ 생산기술 축적경도(중장동류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3	5	7	10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가점 (3)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1	2	3			

개편 전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평점
		1	2	3	4	5	
경영 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불일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CCC+이하 또는 없음	B+ ~B-	BB+ ~BB-	BBB+ ~BBB-	AAA ~A-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외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1	2	3	4	5	
기술 개발 여건 (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2	5	7	10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2%미만	2%이상	5%이상	7%이상	10%이상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1	2	3	4	5	
	○ 신기술 인증 보유 NEP, NET, G8, 등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0개	1개	2개	3개이상		
생산 및 품질 관리 (60)	○ ISO9001, ISO14001, 단계표준인증 제품, GR, R, 환경표지인증, K9등 공인인증 보유	2	3	4	5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을 기준	7	11	15			
	○ 생산기술 축적경도(중장동류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3	5	7	10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6	10				
가점 (3)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1	2	3			

개편 후



투자 추가

신뢰성인증(R) 삭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최초)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품명			
핵심기술명			

2. 적합성 심사표

항목	심사 기준	배점	평점
(80) 기술성평가 (80)	성능 개선도 (20)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크게 향상 (3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이 다소 개선 (10% 이상)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부가적인 성능이 개선 국내 최고수준의 제품 대비 성능개선이 미흡	20 15 10 0	
	개선 난이도 (20)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매우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보통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이 조금 어려움 제품의 동종업계에서 기술 달성에 어려움 없음	20 15 10 0	
(20) 경제성평가 (20)	발전성 (20)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20 15 10 0	
	과급성 (20)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의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20 15 10 0	
(20) 시장규모 (20)	생산가격 경쟁력 (10) 0% 이하(10점), 0%초과 ~ 6%미만(8점), 6%이상 ~ 12%미만(6점), 12%이상 ~ 18%미만(4점), 18% 이상(2점) * 산출식=(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시장 규모 (10)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잠재 시장규모도 상당히 큼 수출 잠재성은 낮으나 국내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큼 국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 될 수 있음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10 8 6 4 0	
총 점			

3. 심사의견

개편 전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최초)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품명			
핵심기술명			

2. 적합성 심사표

항목	심사 기준	배점	평점
(50) 기술성 (50)	기술 반영도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10	
	성능 적합성 -제시된 시험방법이 국내(국제) 표준과 일치하거나 높은가? -제시된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성능을 설정하는데 적절한가? -국내 최고수준 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우수한가? -핵심수입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핵심수입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15	
(30) 경제성 (30)	기술력 객관성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신청제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 신청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별 시험성적서가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는가?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규격·최소규격·중간 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난이도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및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도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10점), 2년 이내 (8점), 1년 이내 (6점), 6개월 이내 (4점), 3개월 이내 (2점)	10	
(20) 공공시장 적합성 (20)	가격 경쟁력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 시장우위 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0% 이하 0 이상 ~ 6% 미만 6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8% 미만 18 이상 미제시 10 8 6 4 2 0	10	
	경제력 파급력 -타 공동부품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효율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20) 인성력 생산능력 (20)	시장규모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가 가능한가?)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10	
	공공성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인가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인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의향할 보유하고 있는가? -공공기관 납품 후 성능보형 또는 하자이행보충 등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총 점			

정성적 기준을 정량적 기준으로 변경, 심사지표 전문화

3. 심사의견

개편 후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신제품)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 번호	신청기업명
제품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표

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80) 기술 성형	성능 완성도가 우수함	20	
	성능 완성도가 다소 우수함	15	
	성능 완성도 수준이 보통임	10	
	성능 미흡	0	
(80) 가 발전성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 높음	20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 다소 높음	15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 보통 수준임	10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 낮음	0	
(80) 가 발전성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20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15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10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0	
(80) 가 발전성	혁신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20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15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10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0	
(80) 가 발전성	시장 판매 시 가격 경쟁력이 높음	10	
	시장 판매 시 가격 경쟁력이 보통	5	
	시장 판매 시 가격 경쟁력이 낮음	0	
(80) 가 발전성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잠재 시장규모도 상당히 큼	10	
	수출 잠재성은 낮으나 국내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큼	8	
	국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 될 수 있음	6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4	
총 점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0	

3. 심사의견

개편 전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신제품)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 번호	신청기업명
제품명	
적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표

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50) 기술성 (50)	기술 반영도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료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10	
	성능 적합성	-제시된 시험방법이 국내(국제) 표준과 일치하거나 높은가? -제시된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적절한가?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15	
	기술적 객관성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신청제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 신청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별 시험성적서가 꼭 필요함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규격·최소규격·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10	
	난이도	-신청제품의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10점), 2년 이내 (8점), 1년 이내 (6점), 6개월 이내 (4점), 3개월 이내 (2점)	10	
(40) 경제성 평가 (40)	가격 경쟁력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 시장우위 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0% 이하 0% 이상 ~ 6% 미만 6%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8% 미만 18% 이상 미제시 10 8 6 4 2 0	10	
	경제적 파급력	-타 중공부품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효율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5	
	시장규모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15	
(10) 공공 시장 적합성 (10)	공공성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중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인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5	
	안정적 생산능력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공기관 납품 후 성능보형 또는 하자이행보충 등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5	
총 점				

정성적 기준을
정량적 기준으로 변경,
심사지표 전문화

3. 심사의견

개편 후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1. 연장신청 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품명			
최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기준

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80) 제품 성능 (8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매우 높음(30% 이상)	61~8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조금 높음(10% 이상)	41~6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비슷함	21~40	
	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대비 제품성능 경쟁력이 없음	0~20	
(20) 생산 가격 경쟁력 (20)	0% 이하(20점), 0%초과 ~ 6%미만(16점), 6%이상 ~ 12%미만(12점), 12%이상 ~ 18%미만(8점), 18% 이상(4점)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 기존 제품 :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		
	(2) 가점 (2점)	수출실적이 기업 매출의 20% 이상(4점), 10%이상 ~ 20%(2점) * 직접 수출에 한함	
총점			

3. 심사의견

개편 전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연장신청)

1. 연장신청 정보

접수번호		신청기업명	
제품명			
최용기술명			

2. 적합성 심사기준

선택	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input type="checkbox"/>	제품 상용화 지연 (100)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인되고,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상용화가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되는가?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 제품의 경쟁력 (100)	생산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2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d style="text-align: center;">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0% 이상 ~ 6%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 이상 ~ 12%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 이상 ~ 18%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제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able>	0% 이하	0% 이상 ~ 6% 미만	6%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8% 미만	18% 이상	미제시	25	20	15	10	5	0		
0% 이하	0% 이상 ~ 6% 미만	6% 이상 ~ 12% 미만	12% 이상 ~ 18% 미만	18% 이상	미제시											
25	20	15	10	5	0											
	기술력 경쟁력	최초 성능인증제품이 연장신청 시에도 여전히 동종·유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성능인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동종·유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75													
<input type="checkbox"/>	시장형성 미흡 (100점)	성능인증제품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가 제품의 성능 우수성이 확인되는가? 시장형성 미흡과 신청제품 판매실적 저조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증명되는가?														
총점																

3. 심사결과 및 의견

연장적부	적합 / 부적합
연장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2년6월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1년6월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6월

개편 후

유효기간 연장사유 확인으로 기준 변경

연장 적부 결정, 기간 선택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기간연장 희망기간

구분	6개월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선택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시행세칙 제22조)

유효기간 연장 사유	선택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
희망기간(6개월~3년) 선택

시행세칙 제22조에 따른
연장 사유(3가지) 중 선택(중복 가능)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신청사유 별
증빙자료 작성 및 첨부 필요

3. 성능인증 연장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판매가 부진하여 성능인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설명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유지 : 최초 성능인증 발급 당시 인정되었던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이 연장을 신청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유사 또는 경쟁제품군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우위가 여전히 인정됨을 객관적 비교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설명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 우려 :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시장이 확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장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설명

위와 같은 사유로 성능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기업명 대표자 (인)

개편 후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로그인

* www.smpp.go.kr

* 검색사이트에

‘공공구매종합정보’

검색어 입력으로도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 계정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필수)

1

2

3

SMPP서비스 나의업무 사이트맵 testbiz05 님 로그아웃

공공구매종합정보 Public e-Procurement information

- 기업정보 등록/변경 · 직접생산확인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 성능인증 · 소액수의계약추천 · 공동사업제품추천
- 입찰정보 · 공공구매론 · 회원서비스

성능인증

성능인증 안내

신청

- 신청내역목록
- 영문인증서발급신청
- 성능인증담당자 연락처
- 성능인증 수수료 수납

CLOSE

2018.12.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구분	신청	실사중	심사중
건수	0건	0건	0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구분	신청	처리완료
건수	0건	0건

CONTACT US

궁금하신 사항에 상세히 답변 드립니다.

상세보기 >

① 홈페이지 상단
[나의업무] 클릭

② [성능인증] 클릭

③ [신청] 클릭

재발급사유	연장신청 ▼																
연장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1. 제품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input type="checkbox"/> 2. 기술개발제품 경쟁력 인정 <input type="checkbox"/> 3.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될 우려																
납품기관 및 실적	<table border="1"> <tr> <td></td> <td>등</td> <td></td> <td>개 공공기관,</td> <td></td> <td>건</td> <td></td> <td>억원 계약 체결</td> </tr> <tr> <td></td> <td>등</td> <td></td> <td>개 공공기관,</td> <td></td> <td>건</td> <td></td> <td>억원 납품 완료</td> </tr> </table>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성능인증 연장신청서	성능인증 연장신청서.hwp																
성능인증제품 판매 실적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hwp																
재발급증빙서류	<div style="text-align: center;"> 파일 올리기 첨부 가능 건수 : 5개 / 건별 용량 : 6.0MB / 전체 용량 : 30.0MB </div>																

재발급사유가 정보변경(업체명, 대표자명, 본사주소 변경) 인 경우는 업체정보 변경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① 홈페이지 상단 [나의업무] 클릭
- ② [성능인증] 클릭
- ③ [신청내역목록] 클릭
- ④ [신청품목] 클릭
- ⑤ 페이지 하단 [재발급] 신청
- ⑥ [재발급 사유] 선택 후, 관련 서류 업로드

성능인증 신청

확대 축소 리셋 프린트

Ⓞ 장시간 입력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로그아웃이 될 수 있으니, 연장 버튼을 눌러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까지 29분 49초

연장

■ 업체정보

업체명 *	중소기업테스	대표자명 *	김성광,이성광,홍길동,홍길동1
본사주소 *	073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75		
	test		
주업종 *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	2098138059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p style="text-align: center;">파일 올리기</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첨부 가능 건수 : 1개 / 건별 용량 : 15.0MB / 전체 용량 : 15.0MB</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가능 : 1개)</p>		

■ 공장현황

공장추가

제조공장(1)*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회사전화번호 *	<input type="text"/>	회사팩스번호 *	<input type="text"/>

● 업체정보

- 업체명 : 자동 입력사항
- 본사주소 : 자동 입력사항
- 주업종 : 돋보기(아이콘) 클릭 후 해당 업종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 입력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원본 스캔 후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 (jpg, pdf 등 형식 무관)
- * 법인등기부등본은 업력 확인을 위한 자료로 필수 확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공장현황

- 제조공장 : 돋보기(아이콘) 클릭
→ 회원가입 시 입력한 공장 선택
- 회사/팩스번호 : 직접 입력
- 공장추가가능 : 수수료 별도 추가

■ 업체현황(인원/자본금)

종업원수 *	임원 : <input type="text"/> 0	사무직 : <input type="text"/> 0	기술직 : <input type="text"/> 0	기타 : <input type="text"/> 0
자본금 *	<input type="text"/> 0	백만원	연간매출액 *	<input type="text"/> 0
연구개발비용 *	<input type="text"/> 0	백만원	설비자동화율 *	<input type="text"/> %

■ 업체성능담당자

성명 *	<input type="text"/>	직위 *	<input type="text"/>
휴대폰 *	<input type="text"/>	회사이메일 *	<input type="text"/>
자격구분 *	선택하세요 ▼	자격번호	<input type="text"/>

- **업체현황(인원/자본금)**
 - 4대보험 증명서 및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입력
 - * 심사 시 확인하는 사항, 증빙서류 내용과 동일해야함
- **업체성능담당자(연락망)**
 - 성능인증 신청, 심사, 발급 대응 가능한 직원 인적사항 입력
 - * 심사일정, 결과 등이 입력하신 연락처로 직접 안내되므로 오탈자 입력에 주의

신청품목

신청품목*	<input type="text"/>
제품분야*	선택 ▼
세부품명번호*	<input type="text"/> 🔍
규격 또는 호칭*	<input type="text"/>
제품개요/특징*	<input type="text"/> 0 / 4000bytes
제품기능*	<input type="text"/> 0 / 4000bytes
제품용도*	<input type="text"/> 0 / 4000bytes
신청근거*	<input type="text"/> 🔍
모델명	<input type="text"/>
특허번호	예시 10-1234567 ※ 특허번호는 등록된 특허번호의 숫자와 "-" 기호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예시 10-1234567) ※ 적용특허가 다수인 경우 핵심 특허번호 1개만 입력하세요
납품예상기관*	<input type="text"/> 🔍

납품예상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알리오 또는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홈페이지 검색기관

● 신청품목

- 신청품목 : 제품명 직접 입력
- * 000 기술을 적용한 00제품 등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
- 납품예상기관 : 돋보기 클릭
→ 공공기관/지자체 검색 후 선택
- 세부품명번호 : 돋보기 클릭
→ 물품번호 선택 후 적용
- 규격 또는 호칭 : 직접 입력
- 제품개요/특징기능/용도: 직접입력
- 신청근거 : 돋보기 클릭
→ 특허또는인증제품 선택/적용
- 모델명 : 직접 입력
- * 000 모델 등 00종
- 특허번호 : 직접 입력
- * 10-1234567(숫자와-만 입력)
- 제품분야 : 해당 분야 선택

※ [세부품명] / [제품분야] 는 심사를 위해서 신청 제품분야와 가장 적합한 분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이행 - 콘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공지사항 전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발급을 위한 연락 및 정보 전달 등

[동의 거부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한 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다음페이지

● 이용약관

- 약관 동의 후
다음페이지 이동

■ 첨부파일 현황

규격서 등	<div style="text-align: center;"> 파일 올리기 첨부 가능 건수 : 5개 / 건별 용량 : 15.0MB / 전체 용량 : 75.0MB </div> <p>(첨부가능 : 5개) * 시험검사성적서(3년이내 발급분 유효) 보유시 제출 * 제품규격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시험검사성적서, 제품소개서 등(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제시)</p>			
표준규격서 양식	[다운로드] 성능인증 표준규격서.hwp			
타기관성능검사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성능검사서없음 <input type="radio"/> 성능검사서있음			
타기관성능검사정보	인증번호	발급기관	발급일자	항목추가
타기관성능검사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파일 올리기 첨부 가능 건수 : 2개 / 건별 용량 : 30.0MB / 전체 용량 : 60.0MB </div> <p>(첨부가능 : 2개)</p>			
제품이미지	<div style="text-align: center;"> 파일 올리기 첨부 가능 건수 : 5개 / 건별 용량 : 15.0MB / 전체 용량 : 75.0MB </div> <p>(첨부가능 : 5개)</p>			

● 첨부파일 현황

① 규격서 등 (필수)

- 표준규격설명서
- 근거기술 증빙서류 등
(특히, 기술개발결과완료 공문 등)

② 타기관성능검사여부 (필수)

- 제품 시험성적서
(KOLAS 인정기관, 시험인증 분야)

③ 제품이미지

- 제품 카탈로그, 기타 설명자료 등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 설정

- 업체명_표준규격설명서
- 업체명_성능검사서
- 업체명_특허관련서류
- 업체명_00개발사업 성공공문

※ 제품이미지 등 파일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압축 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인증서 신청 * 영문인증서는 발급 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공장추가

신청여부	<input type="radio"/> 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안함
영문업체명 (Company)	<input type="text"/>
영문대표자명 (President)	<input type="text"/>
영문본사주소 (Address)	<input type="text"/>
영문신청품목 (Product)	<input type="text"/>
공장주소 (Factory address)	<input type="text"/> 삭제

● 영문인증서 신청

- 영문인증서 발급
필요 시 입력
- 성능인증서 발급 후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오니
최초 신청 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현재 시스템 개선 중)

■ 공개검증 정보제공 동의

공개검증 동의내용	<input type="radio"/> 전부공개(규격설명서, 성능검사 성적서, 기타 설명자료) <input type="radio"/> 일부공개 (<input type="checkbox"/> 규격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성능검사 성적서 <input type="checkbox"/> 요약서)
요약서	파일 올리기 첨부 가능 건수 : 1개 / 건별 용량 : 15.0MB / 전체 용량 : 15.0MB
요약서 양식	[다운로드] 공개검증 요약서 양식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파일 올리기 첨부 가능 건수 : 1개 / 건별 용량 : 15.0MB / 전체 용량 : 15.0MB
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공개검증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이전페이지

신청

목록

● 공개검증 정보제공 동의(필수)

① 공개검증 동의내용

- 전부공개, 일부공개 중 선택
- * 전부공개 : 규격서, 시험성적서, 제품이미지 등 전부 공개
- * 일부공개 : 선택항목 한정 공개

② 요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업로드

※ 접수완료 후 14일간 공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SMPP서비스→정보조회→ 성능인증 공개검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①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능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 관련정보를 성능인증 처리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생년월일, 주소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공개검증 동의내용 (V 표시)	<input type="checkbox"/> 전부 공개 (규격설명서, 성능검사 성적서, 기타 설명자료) <input type="checkbox"/> 일부 공개 (<input type="checkbox"/> 규격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성능검사 성적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요약서) ※ 요약서 선택 시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년 월 일

회사(법인)명: _____ (인)

동의자(대표자)명: _____ (인)

생년월일(대표자): _____

법인등록번호: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주 소: _____

전문기관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②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제품명	모델명	model-001 외 ㅇ 중		
신청기업	대표자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제품의 특징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특징, 우수한 성능을 기재 (사진 필수)				
① ②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되, 성능인증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표시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신뢰성있는 성능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인증, 시험성적서 등)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한 규격의 특징을 표시				
신청 모델(규격) 다수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차이점 표시				
<예사>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 공개검증 정보제공 동의 관련 제출서류 안내
- ① (필수)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② (선택) 공개검증 요약서
 - * 정보 제공 동의서 일부공개 → 요약서 선택 시 작성

The screenshot shows the SMPP service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SMPP서비스' and '나의업무' (My Business). A red box highlights '나의업무' with a circled '1'.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menu with '성능인증' (Performance Certificati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2'. The main content area has a '성능인증' (Performance Certification) section with a sub-menu. A red box highlights '신청내역목록' (Application History List) with a circled '3'. Below this, there are two tables showing application statistics for '직접생산확인증명서' (Direct Produc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성능인증

- 성능인증 안내
- 신청내역목록**
- 영문인증서발급신청
- 성능인증담당자 연락처
- 성능인증 수수료 수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구분	신청	실사중	심사중
건수	0건	0건	0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구분	신청	처리완료
건수	0건	0건

- ① 홈페이지 상단 [나의업무] 클릭
- ② [성능인증] 클릭
- ③ [신청내역목록] 클릭

- 성능인증 확인서 재신청
 - 성능인증 신청이 "신청취소", "반려" 등으로 발급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다시 신청
 - ※ 발급/신청된 품목을 선택하여 상세화면의 최하단 재신청 또는 재발급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 e-카탈로그 작성
 - 기술개발제품의 등록된 물품에 대해 e-카탈로그 등록 및 작성
 - ※ 발급된 성능인증 내용이 e-카탈로그 작성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역목록(접수대기중)
 - 신청 후 전문기관의 서류검토중인 상태입니다.
 - 전문기관이 접수 완료한 경우 진행단계가 '수납요청'으로 변경되며, 수수료 금액이 이메일,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일자 ~
 진행단계
 신청구분

접수일자 ~

[^ 더보기](#)

전체 | 1개 목록개수 15개

신청구분	신청번호 신청일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품목	진행단계	인증번호	유효기간	종합결과서	인증서 e-카탈로그 작성
신규	201900003 (1) 2019-01-01	2018-01-01 1 산학연-2019-01-0002	성능인증 테스트제품	접수대기중				

SMPP서비스 **나의업무** 사이트맵 testbiz05 님 로그아웃

공공구매종합정보
Public e-Procurement information

- 기업정보 등록/변경
- 직접생산확인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 성능인증**
- 소액수의계약추천
- 공동사업제품추천
- 입찰정보
- 공공구매론
- 회원서비스

성능인증

성능인증 안내
신청
신청내역목록
영문인증서발급신청
성능인증담당자 연락처
성능인증 수수료 수납

CLOSE

2018.12.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구분	신청	실사중	심사중
건수	0건	0건	0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반납

구분	신청	처리완료
건수	0건	0건

CONTACT US
궁금하신 사항에 상세히 답변 드립니다.
상세보기 >

① 홈페이지 상단
[나의업무] 클릭

② [성능인증] 클릭

③ [성능인증 수수료 수납] 클릭

성능인증 수수료 수납 및 환불

 확대  축소  리셋  프린트

■ 수납 안내

- 수납은 **가상계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한 성능인증 건이 **모두 서류검토가 완료**되어야 수납이 가능합니다.
- 수납요청건 중에 일부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좌측 **“신청발급내역”** 메뉴에서 **“신청취소”** 후 수납진행

■ 가상계좌 결제시 안내

- 수납 마무리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유무”**에 **“예”**를 체크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유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발행내역은 **“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비용 지급한 구매자의 **휴대폰번호나 사업장정보**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정보의 별도 입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결제 완료시
“현금영수증 발급”에 “예”를 체크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납”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른 **3일 후 “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 안내

- **접수대기중** : 전문기관에서 서류검토가 진행중인 상태
- **수납요청** : 서류검토가 완료되어 수납요청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수납이 필요한 상태
- **결제완료** : 성능인증 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상태
- **환불완료** : 결제완료된 건이 환불이 완료된 상태

● 수수료 수납 페이지 1

- 페이지 스크롤 하단 이동
- 페이지 하단에서 수수료 수납 업무처리 가능

※ 기존 3일 제한규정 변경

■ 진행단계 안내

- **접수대기중** : 전문기관에서 서류검토가 진행중인 상태
- **수납요청** : 서류검토가 완료되어 수납요청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수납이 필요한 상태
- **결제완료** : 성능인증 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상태
- **환불완료** : 결제완료된 건이 환불이 완료된 상태

상세내용 보기

신청일자 2018-12-02 ~ 2019-01-02 수납일자 ~
수납 진행단계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전체

검색

초기화

전체 금액 : 700,000원 전체 | 1건

목록개수 15개 선택

※ 수납버튼을 클릭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면담자 휴대폰번호로 은행/계좌번호/입금금액이 안내됩니다.

접수번호	업체명	사업자번호	수납금액	수납요청일	수납일	수납완료일	현금영수증	진행단계	수납방법
201900002	공공구매테스트업체123	2098138059	700,000원					수납요청	수납

1

- 수수료 수납 페이지 2
- 신청 제품 목록의 우측 [수납]을 클릭

※ 기존 3일 제한규정 변경

○ 접수대기중 : 전문기관에서 서류검토가 진행중인 상태
○ 수납요청 : 서류검토가 완료되어 수납요청 안내 문자를 받은 3영업일 이내에 수납이 필요한 상태

공공구매종합정보 **가상계좌** English 동의 > 은행선택 > 결제확인

가상계좌

약관 및 이용 동의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보기

NHN한국사이버결제(주)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안내 보기 동의합니다.

이용자가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금결제 및 결제진행 과정 중 본인식별, 인증, 실명확인과 이용자의 결제내역 요청에 대한 응대, 확인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상기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취소 **다음단계**

주문상품
성능인증신청 수수료
제공기간

상품금액 **770,000 원**
결제금액 **770,000 원**

도움말 | 개인정보처리방침

튼튼한 전자상거래 파트너 NHN KCP

- 가상계좌 발급 이동동의
 -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가능
 - 결제페이지 안내에 따라 은행을 선택 후 가상계좌에 수납 진행

○ 접수대기중 : 전문기관에서 서류검토가 진행중인 상태
○ 수납요청 : 서류검토가 완료되어 수납요청 안내 문자를 받은 3영업일 이내에 수납이 필요한 상태

공공구매종합정보 **가상계좌** Public e-Procurement Information 동의 > 은행선택 > 결제확인

가상계좌

입금은행 선택

▶ 입금자: 공공구매테스트업체 12
▶ 입금은행: - 은행선택 -
▶ 계좌번호: 가맹점 주문완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감기한: 2019년 01월 02일 23시 59분 59초

주문상품: 성능인증신청 수수료
제공기간

상품금액	770,000 원
결제금액	770,000 원

취소 다음단계

튼튼한 전자상거래 파트너 NHN KCP 도움말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상계좌 발급

- 가상계좌를 발급받으실 은행을 선택 후 다음 단계를 진행
- 발급받으신 가상계좌에 성능인증 수수료 금액을 입금하시면 신청 절차 완료

○ e-카탈로그 작성

- 기술개발제품의 등록된 물품에 대해 e-카탈로그 등록 및 작성

※ 발급된 성능인증 내용이 e-카탈로그 작성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자 ~
 진행단계
 신청구분

접수일자 ~

더보기

검색

초기화

전체 | 1개


목록개수 15개

신청구분	신청번호 신청일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품목	진행단계	인증번호	유효기간	종합결과서	인증서 e-카탈로그 작성
신규	201900003 (1) 2019-01-01	2018-01-01 산학연-2019-01-0002	성능인증 테스트제품	적합성심사 중				

1

● 수납 및 신청 완료

- 성능인증 수수료 납부완료 시 적합성심사중 사태로 변환
- 심사일정은 신청서에 입력하신 성능인증 담당자 이메일, 휴대폰 등을 통해 별도 안내



감사합니다

문의 공공구매지원팀 042-712-5641~5

★ **성능인증 소개 페이지 접속 방법**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상단 메뉴 'SMPP소개'
>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성능인증' 클릭